

## 2026년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지원사업」 재공고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2026년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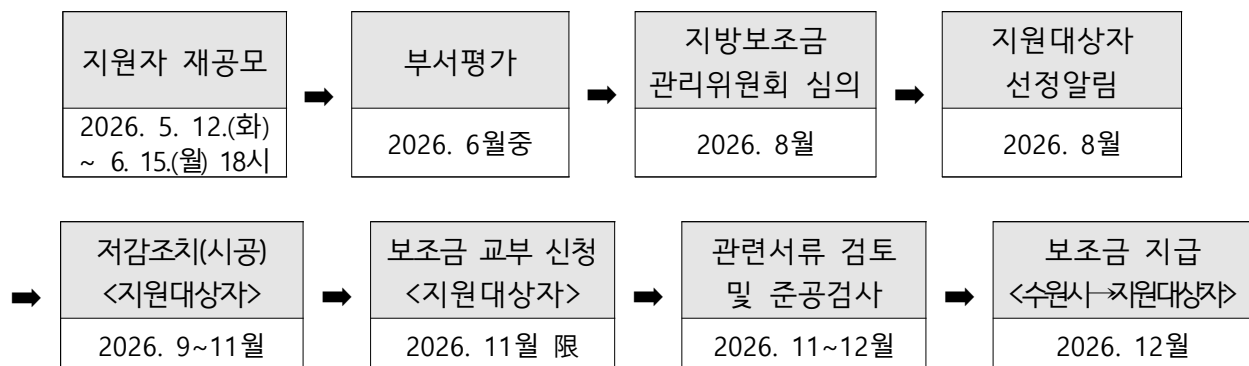
수 원 시 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심 속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저감 유도
- 사업기간 : 2026. 8월 ~ 11월
- 지원대상 : 관내 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 (의무대상 제외)

※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원내용 :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5,000천원 \*신청규모 고려, 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 지원비율 : 저감조치 비용 총액의 70% 보조 (30% 자부담)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공모 및 저감조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시공 일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일정 조정 예정

## 2. 신청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5. 12.(화) ~ 6. 15.(월) 【35일간】
- 신청기간 : 2026. 5. 12.(화) ~ 6. 15.(월) 18시까지 【35일간】
- 신청자격 : 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시청 새빛민원실(본관 1층))
  - \* 방문 시 담당자 유선연락(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031-5191-2459)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시공 전문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권장)
  - 라. 자격별 증빙서류 \*공고일 기준
    - ① (소유자)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 증명 서류
    - ② (관리자) 사업자등록증, 위탁관리 계약서, 관리소장 임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추가 제출
  - 마.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빙 자료(환경부 공문 등)

## 3.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 선정방법 : 부서평가(정량)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 부서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가점 득점자 우선 선정, 가점 미해당 시 다음의 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 ① 피해규모, ② 사업효과성, ③ 사업계획타당성
  -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시행 없이 부서평가가 진행되며, 최저점(60점) 이상인 경우 선정됨

○ 평가항목

| 구분       | 분야                | 심사항목        | 심 사 내 용                                                                   | 배점                            |
|----------|-------------------|-------------|---------------------------------------------------------------------------|-------------------------------|
| 기본<br>배점 | 계                 |             |                                                                           | 100                           |
|          | 사업<br>내용<br>(80점) | 지원<br>필요성   | • 주변 자연환경 등 환경적 중요성·상징성<br>• 조류 충돌 피해 관련 민원 규모                            | 20                            |
|          |                   | 피해<br>규모    | • 최근 3년간 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br>(네이처링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등 참고)                   | 20                            |
|          |                   | 사업계획<br>타당성 | • 사업계획 수립의 완성도<br>•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br>(시공일정, 예산, 시공방법 등)                 | 15                            |
|          |                   | 사업<br>효과성   |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창의적·효율적 방안 제시<br>• 당해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도<br>• 자체 추가 사업계획 여부 | 15                            |
|          |                   | 사후<br>관리계획  | •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br>• 사후 홍보 계획의 적절성                                 | 10                            |
|          | 예산<br>편성<br>(20점) | 예산<br>효율성   |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자부담 비율 정도 등)<br>• 예산의 짜임새 및 현실성 평가(불필요 항목 여부)          | 10                            |
|          |                   | 예산<br>적정성   | • 신청 보조금의 적정성(산출내역 항목 체크)<br>•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목별 구성의 적절성                    | 10                            |
|          | 가점                |             |                                                                           | • 환경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선정 여부 |

○ 선정결과 : 심의결과에 따라 개별 통지(2026. 8월 예정)

#### 4. 보조사업 수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한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시설물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최대 면적 부착이 원칙이며, 비용 고려 일부 시공 시 부착면적 확보를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적용할 것

#### 5.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시공 완료 이후
-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나.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자부담금 예치 필수) 1부.
- 다. 시공업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라.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마. 기타 준공서류 일체 1부.

##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계획서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함
- 신청금액의 총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신청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지원금에 맞춰 총사업비 및 자부담액을 재산정하여야 함
- 지원금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기업은행) 사용 필요
  - 신규 개설 또는 기존 통장(잔고 0원으로 하여 자부담금 예치, 기업은행)
- 자부담금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업 시작 전 보조금 관리 통장에 예치하여야 함](#)
- 기타 지방보조사업 지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등 관련 규정과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 본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031-5191-2459)으로 문의